

3.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

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함)이 정보보호대학원(이하 "대학원"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창의적 정보보호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 (재학년한) ① 재학년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② 석·박사통합과정은 1년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
③ 석·박사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4 조 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,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동안 매학기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수강신청 정정)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 6 조 (학점취득)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2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전공별 기초공통과목 3과목(9학점)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

- 제 7 조 (학점인정) ① 박사과정 입학 전의 초과취득학점 인정은 학기초 20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제청에 따라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원 및 본교 일반대학원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 석사과정 졸업자에 한하며, 학점인정 시기는 입학 첫 학기로 제한한다.
- ②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제청과 학과주임 교수 및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, 본 대학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.
- ③ 편입학자의 입학 전의 취득학점 인정은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- ④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과주임교수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- 제 8 조 (이수지정과목) ① 이수지정과목(이하 "선수과목"이라 함)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과주임교수의 승인 또는 선수과목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있다.
- ② 선수과목 이수자는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15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.

- 제 9 조 (지도교수 및 박사과정 지도위원회) ① 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석사과정

가. 입학과 동시에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위촉한다.

나.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대학원장은 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2명의 전공분야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2.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

가. 입학과 동시에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위촉한다.

나.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대학원장은 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.

③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지도 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한다.

제 10조 (지도교수 변경)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사유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,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 11조 (학위청구 자격) ① 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박사과정에서 36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석박사통합과정에서 5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 12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)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6년, 박사학위과정은 10년,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. 다만, 군복무, 출산, 휴학,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또한, 석사학위과정은 3년, 박사학위과정은 5년, 석박사통합과정은 6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학기 연구내용 및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)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

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서 1부
2. 논문 3부
3. 논문제출 승인서(지도 교수 작성)

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서 1부
2. 추천서 1부
3. 이력서(사진첨부)1부
4. 논문 5부

③ 각 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학사일정에 따른다.

제 14조 (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)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자격시험의 종류)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

② 외국어시험은 외부 공인 기관이 시행한 영어시험으로 하며,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제 16조 (종합시험 응시자격) ①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12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②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3과목 내에서 시행한다.

③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④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5과목 내에서 시행한다. 다만, 본 대학원 및 본교 일반대학원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인정한 석사학위 종합시험 3과목을 포함하여 시행한다.

⑤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30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⑥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5과목 내에서 시행한다.

⑦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7조 (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)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내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한다.

제 18조 (논문심사위원회) ① 석·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석·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가 행한다.

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,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며,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,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

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④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,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19조 (논문심사) ① 학위 논문의 심사방법은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2차로 공개구술시험을 과한다.

② 논문의 최종심사는 합격,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 20조 (학위수여 심의)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,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21조 (장학금)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.

제 22조 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,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23조 (연구생)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
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할 수 있다.

제 24조 (연구기간 및 연구과제)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.

제 25조 (계약학과) 본 대학원의 계약학과는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 다만, 수업연한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 26조 (수료연구생) ① 2014년 이후 입학생으로 석사, 박사,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요구하는 학기와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수료연구생이라 한다.

② 전 항의 수료연구생에게는 대학원 학칙의 적용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 27조 (대학원위원회의 회의) ①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, 학과주임교수, 정보경영공학부장, BK21사업단장, BK21사업팀장을 포함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"위원회설치운영규정"을 준용한다.

제 28조 (준용)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1조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6조, 제8조, 제16조, 제25조 개정 및 제26조 신설)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3조, 제7조 및 제16조)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 25조 신설)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2조 자구수정, 제9조 자구조정 및 목 신설, 제12조 자구수정, 제26조 신설)